

성신학원 2026학년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이사정수	9인	재적이사수	9인
감사정수	2인	재적감사수	2인

1. 일 시 : 2026년 3월 12일(목) 17:00~17:53 (회의소집 통보일 : 2026년 3월 3일)

2. 장 소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34다길2 성신여자대학교 행정관 2층 회의실

3. 임원 출석현황

○ 참석 임원

이사(8인) : 김향기, 박종수, 김선현, 이상용, 김귀옥, 김승태, 문소영,
정연순

감사(2인) : 최 훈, 강은옥

○ 불참 임원

이사(1인) : 김성진

4. 안 건

가. 안건

제1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사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3호 의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제4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중 교직원 연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안)

제5호 의안 : 성신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호 의안 : 각 호 의안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안)

나. 기타 논의 및 보고사항

정연순	박종수	김선현
-----	-----	-----

5. 회의 내용

가. 개회

- 의장은 간사로부터 재적이사 9인 중 7인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다는 성원 보고를 받고, 성신학원 정관에 따라 2026학년도 제1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는 성신학원 정관 제32조 3항에 의거 원격영상회의와 현장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설명하다.

나. 안전심의

1) 제1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사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1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사직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17시 3분 김귀옥 이사 출석)

- 법인사무국장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이 2026년 3월 3일 총장직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2026년 3월 12일자로 총장 보직 면직을 처리하고자 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 의장은 2026년 3월 10일에 성신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 후보 선거 및 입후보자 등록이 공고되었고, 이에 따라 입후보자 등록을 위한 보직 사임임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제1호 안전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의 사직원에 대해 이성근 총장을 2026년 3월 12일자로 총장 보직을 면하는 것으로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17시 7분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 입장)

2) 제2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2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사항을

제연수	백종수	기선현
-----	-----	-----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의 2026년 3월 12일자 총장 보직 사임에 따라 총장 직무대리 임용이 필요하며, 성신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의 임기 시작일이 2026년 7월 1일부터임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정해야 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 의장은 논의사항이 총장직무대리의 임기와 총장직무대리의 선임의 두가지임을 말하다. 먼저, 총장직무대리의 임기를 현 총장의 잔여임기인 2026년 5월 31일까지로 할 것인지, 또는 제13대 총장임기 시작(2026.7.1)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할 것인지를 정한 다음, 총장직무대리를 선임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을 말하다.
- 이상용 이사는 기간 공백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13대 총장 임기 시작일 전까지 총장 직무대리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말하고, 총장직무대리로 추천할 인사가 있는지를 묻다.
- 의장은 총장직무대리의 임기에 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지를 물었으나 다른 의견 없이 제13대 총장의 임기 시작 전인 202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이상용 이사의 제안에 출석 이사 전원이 찬성을 하다.
- 의장은 총장직무대리의 선임과 관련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부총장이 총장 궐위 시 대리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법인 이사회 의 총장직무대리 임명이 있기 전까지 유효한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다만 학사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감안하여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부총장을 총장 직무대리로 추천한다고 말하다.
- 김귀옥 이사는 정관상 대외협력부총장도 있는데 현재 공식인지를 묻다.
- 의장은 전임 총장 때 대학 재정 확보 등 대외협력의 필요성에서 대외협력부총장제를 마련하고 이성근 현 총장을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임명하여 대외협력 및 기금 모집을 하였는데, 지금은 현 총장이 그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대외협력부총장은 공식으로 두고 있다고 말하다.
- 의장이 제2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 여부를 묻자, 성신여자대학교 이원호 부총장을 2026년 3월 13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총장 직무

김귀옥	박종수	김신현
-----	-----	-----

대리로 임용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3) 제3호 의안 :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3호 의안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회의자료에 따라 2025학년도 제7차 이사회에서 2026년 3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된 교원 1인의 임용 직위가 부교수가 아닌 조교수로 정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 박종수 이사가 경력 산정 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사유를 묻다.
- 성신여자대학교 이성근 총장은 해당 교원이 제출한 서류에 정년트랙 및 비정년트랙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경력 산정에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말하다.
- 정연순 이사는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다.
- 의장이 제3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4) 제4호 의안 :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중 교직원 연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4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중 교직원 연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회의자료의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중 연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사항 신·구 조문 대비표에 따라 구체적인 개정사유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 의장이 제4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원안대로 참석이사

정연순	박종수	김선현
-----	-----	-----

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5) 제5호 의안 : 성신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5호 의안 성신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2025년 제7차 이사회에 의결된 바에 따라 2억 2천만 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유가증권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 제정과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의결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다.
- 의장은 현행 법령상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가증권 운용을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나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지만, 다만 법인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향후 교육부의 지도·점검 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자문할 수 있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였다고 설명하다. 아울러 현재 법인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가증권 운용과 관련된 별도의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정관 시행세칙을 개정하여 새로운 위원회를 추가하는 방안 또는 정관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정책자문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이상용 이사는 학교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기금운용위원회와 유사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하다. 다만, 정관에 근거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라 말하다.
- 정연순 이사는 본 안건의 대상이 수익용 기본재산 전체의 관리·운용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권 운용에 한정된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고,

김영수	박종수	김선연
-----	-----	-----

이에 대해 의장은 현재 논의 대상은 신규 취득한 2억 2천만 원 규모의 자금 운용 문제이며 향후 필요시 확대 여부는 다시 이사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하다.

- 김귀옥 이사는 대학 평의회회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 아닌지 물었고, 이에 대해 의장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관한 내용이므로 대학과는 상관 없음을 말하다.
- 정연순 이사는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 할 경우 경제·재무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다만, 정책자문위원회가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별도의 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다.
- 최훈 감사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유가증권 운용이 「사립학교법」 제28조에서 규정한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정연순 이사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유가증권으로 하는 것은 기본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다만, 20억 미만은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사항이 아니라고 말하다.
- 의장이 제5호 안건 심의를 종결하고 금일 논의한 내용들을 고려하여 추가 검토를 진행하여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처리여부를 묻자,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6) 제6호 의안 : 각 호 의안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안)

- 의장은 제6호 의안 각 호 의안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성신학원 이승기 법인사무국장의 의결주문에 이어 상세한 설명을 요청하다.
- 법인사무국장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여 제1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시작원 처리에 관한 사항(안) 중 개인정보(생년월일)에 대한 공개여부, 제2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임용에 관한 사항(안) 중 개인정보(생년월일)에 대한 공개여부, 제3호 의

김귀옥	박종수	김선현
-----	-----	-----

안 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안) 중 개인정보(생년월일)에 대한 공개여부, 제6호 의안 성신여자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중 교직원 연봉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에 관한 사항(안) 중 연봉표에 대한 공개여부에 대해 의결을 요청하다. 이에 의장은 이사들에게 안전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고, 이사들은 해당 안전에 대해 심의하다.

- 의장이 제6호 안전 심의를 종결하고 처리여부를 묻자, 비공개하는 것으로 참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의장이 이를 선언하다.

다. 기타 논의 및 보고사항

- 성신학원 윤광용 법인사무국팀장은 성신학원 소송 진행 현황을 회의자료의 내용에 따라 보고하다.
- 의장은 금번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자로 정연순 이사, 박종수 이사, 김선현 이사 3인을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하고, 차기 이사회는 2026년 5월 21일임을 말하다.

라. 폐회

- 의장은 다른 논의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폐회를 선언하다. (17시 53분)

2026년 3월 12일

기록자 : 이 승 기

위 회의록 내용을 확인함.

김연순	박종수	김선현
-----	-----	-----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김 향 기 김향기

이 사 김 성 진

이 사 박 종 수 박종수

이 사 김 선 현 김선현

이 사 이 상 용 이상용

이 사 김 귀 옥 김귀옥

이 사 김 승 태 김승태

이 사 문 소 영 문소영

이 사 정 연 순 정연순

감 사 최 훈 최훈

감 사 강 은 옥 강은옥

붙임 교원 임용자 명단 1부.

김향기	박종수	김선현
-----	-----	-----

[붙임]

교원 임용자 명단

□ 성신여자대학교 교원 임용

가. 총장 보직 면직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면직일자	비고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이성근		2026.03.12.	

나. 총장 직무대리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임기	비고
성신여자대학교	총장 직무대리	이원호		2026.03.13.~2026.06.30.	

다. 전임교원 신규임용 정정

소속	성명	생년월일	임용직위		임용기간	발령일자
			당초	정정		
프랑스어문·문화학과	김선형		부교수 (정년)	조교수 (정년)	2026.03.01. ~ 2029.02.28. (3년)	2026.03.01.

김성근	백종수	김선형
-----	-----	-----